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419 (2023. 12. 26.)
(유효기간 : 2024. 1. 1. ~ 2025. 12. 31.)

「NH All100플랜통장」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NH All100플랜통장

■ 상품특징 : 연금수급, 카드이용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 및 급여이체, 교차거래 실적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준비) 고객을 위한 입출식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3. 12. 15.)**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1인 1계좌)
상품유형	저축예금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금의 가입	영업점에서 가능
예금의 해지	영업점, 비대면채널에서 가능
이자산출근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지급
이자지급시기	매일 이자를 계산하여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다음날 지급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자율 (연%, 세전)	0.10 (예금종류별 기본이자율 준용)
우대이자율 (연%p, 세전)	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아래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2.00 (기본이자율 포함 이자율 적용 기준) **※ 일별 잔액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우대조건

조건내용	우대이자율
1. 이 통장으로 **연금(공적연금, 농협은행 연금상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1.50
2. 제1호 조건을 만족하고 농협은행 **NH농협카드(채움)를 사용하여 30만원 이상 이 통장으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	0.50
최대한도	2.00

<table>
<tr><td>우대이자율
(연%p, 세전)</td><td>② 적용기준
- 결산일이 속한 달(3월, 6월, 9월, 12월)의 전월부터 과거 3개월(전월/전전월/전전전월) 동안 우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③ 적용방법
- 매 이자결산일 이후 다음 결산기 동안 적용</td></tr>
<tr><td>무통장 거래</td><td>가능</td></tr>
<tr><td>예금 해지 시 불이익</td><td>해당없음</td></tr>
<tr><td>우대
서비스</td><td>① 우대조건
- 전월말 기준 아래 조건 충족 시
<table><tr><th>기본서비스 우대조건</th></tr><tr><td>이 통장으로 연금(공적연금, 농협은행 연금상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td></tr></table><table><tr><td colspan="2">주) 추가서비스 우대조건(2가지 이상)</td></tr><tr><td>❶ NH All100플랜적금</td><td rowspan="4">※ ❶~❹ 공통사항
- 이 통장의 신규(전환)일 이후 신규개설(동일인 계좌)
-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건당 10만원 이체실적 보유</td></tr><tr><td>❷ 적립IRP</td></tr><tr><td>❸ 적립식펀드(임의식 포함, MMF 제외)</td></tr><tr><td>❹ 웰빙라이프연금신탁</td></tr><tr><td colspan="2">❺ 농협은행 NH농협카드(채움)를 사용하여 30만원 이상 이 통장으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td></tr><tr><td colspan="2">❻ 전월말 기준 방카(당행 판매상품) 유효계좌 보유</td></tr></table><u>우대서비스/우대이자율의 기준실적</u> 또는 <u>납입한도</u>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u>자동입출금거래</u>는 <u>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u>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하면 익월실적에 포함됩니다.

② 우대기간
-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거래 시 우대서비스 제공(단, 신규(전환)일로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는 우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기본서비스, 추가서비스) 제공</td></tr>
</table>

<table>
<tr><td>우대
서비스</td><td>③ 우대내용
<table>
<tr><th>서비스구분</th><th>우대내용</th></tr>
<tr><td>기본서비스</td><td>❶ 농협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단, 상담원을 통한 송금수수료 제외)
❷ 농협은행(지역농·축협) CD/ATM기기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수수료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각각 월 5회)
❸ 외화(USD, JPY, EUR) 환전·송금 시 50% 우대환율
※ 실명번호 기준으로 창구거래 시 적용하며 월 횟수제한 없음
❹ 예금 관련수수료 면제(월 3회)
※ 제증명서 발급,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에 한함</td></tr>
<tr><td>추가서비스</td><td>❶ 이 통장을 통한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면제(월 5회, 연동거래에 한하며 회당 1억원 이내)
❷ 타행 CD/ATM기기 현금인출수수료(월 5회)
※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의 CD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td></tr>
</table></td></tr>
<tr><td>거래중지계좌</td><td>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td></tr>
<tr><td>양도</td><td>불가</td></tr>
<tr><td>질권설정</td><td>불가</td></tr>
<tr><td>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td><td>■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td></tr>
<tr><td>휴면예금 및
출연</td><td>■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td></tr>
<tr><td>예금자보호
 </td><td>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td>상품전환</td><td>저축예금, 채움브라보연금통장에서 이 상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이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은 불가</td></tr>
<tr><td>세제혜택</td><td>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td></tr>
<tr><td>연계·제휴서비스</td><td>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3 연금 · 급여입금 적용기준

구 분	종 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농협은행 연금상품	농협은행 예금, 적금, 신탁, 펀드,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기타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연금, 근로복지공단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노후연금), NH농협생명·농협손해(공제, 방카) 연금 등
급여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1. 연금 및 급여의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적용하며, 연금의 경우 '연금'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만 연금으로 인정

「급여이체 기준 주요내용」

※ 급여는 당행 급여입금과 타행 급여입금으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시)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월)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정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O)

- 당행 급여입금 :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
- 타행 급여입금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 급여이체일 등록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및 자동이체에 의한 입금 방식은 제외

2. 기타연금은 연금이 아닌 급여로 인정되나, 기타연금 중 타행에서 입금되고 거래내용에 '연금'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연금으로 인정
3. 기타연금의 급여인정 절차는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의 '급여이체일 등록 조건'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급여이체일 등록된 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

4 유의 사항

- 상품내용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개인고객부)

<별지1>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